

『구미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상위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, 「구미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와 이원화 되어 운영되던 「구미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위원회로 운영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 통합 운영에 따른 제명 변경

나. 「구미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하고

그 내용을 「구미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통합

다. 서면 심의·의결 근거 마련(안 제5조 제8항)

라. 위원회 간사 및 서기 담당 변경(안 제6조)

- 간사 : 지적재조사사업 담당과장 ⇨ 업무팀장

- 서기 : 지적재조사사업 업무팀장 ⇨ 업무담당자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제30조 및 제31조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정책기획과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- 본 「구미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」은,
 -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써,
 - 각 위원회 조례가 상위법인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제30조, 제31조에 의거하여 운영하고 있고, 경북 도내 통합·운영 지자체는 포항시를 포함하여 12개 시·군으로, 이원화로 운영되던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